

제351회 임시회
2015. 10. 07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-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출연목적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에 따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행자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 재원 지원 ※ 전국 시도 균등 출연사업

출연 예정액 : 200,000천원(도비 100%)

- 산출근거 : 2017년 광역시도 출연금 3,300백만원
- 16 시·도 각 200백만원 (세종시 100백만원)

※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의결('14.12.23.) : 시도 기획실장 +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 등

〈각 시도 출연 중기계획(2016~2020)〉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출연금	1.5억원	2억원	2억원	2.5억원	2.5억원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50,000	150,000	0	200,000	50,000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,

<지방재정법>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동 계획안의 출연금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)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도비 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적법하며,

<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>

제3조(출연금)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
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총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또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출연요청액 3,300백만원에 대한 시·도별 균등 부담액(16개 시·도 각 200백만원, 세종시 100백만원)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.

[2016~2020 출연금 중기계획(안)]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세입 계	12,942	13,478	13,894	14,322	14,763
출연금	4,741(36.6%)	6,100(45.2%)	6,100(43.9%)	7,450(52.0%)	7,450(50.5%)
국가출연	2,241(17.3%)	2,800(20.8%)	2,800(20.2%)	3,300(23.1%)	3,300(22.4%)
시도출연	2,500(19.3%) · 시도당 1.5억 · 세종시 1억	3,300(24.4%) · 시도당 2억 · 세종시 1억	3,300(23.7%) · 시도당 2억 · 세종시 1억	4,150(28.9%) · 시도당 2.5억 · 세종시 1억	4,150(28.1%) · 시도당 2.5억 · 세종시 1억
자체수입	8,201(63.4%)	7,378(54.8%)	7,794(56.1%)	6,872(48.0%)	7,313(49.5%)
시도 출연금 증액분		증 8억	-	증 8억	-

- 다만,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인하여 우리 도가 얻는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,
- 지방행정연구원 사업 중 시·도 분담 출연금으로 시·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정되어 내실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에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, 연구결과가 도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[2016년도 특별·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수행실적]

- 수행 과제 : 17과제 (시도 당 1과제)

구분	과제 수	의뢰 시·도
상반기	16과제	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, 울산, 세종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남, 경남, 제주, 광주, 경기, 전북, 경북
하반기	1과제	인천

※ 우리도 :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 핵심 지원시설 구축 방안(16.3~10월)

[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계획]

구 분	2016년	2017년	비 고
출연금	25억원 - 시·도 : 각 15억원 - 세종시 : 1억원	33억원 - 시·도 : 각 2억원 - 세종시 : 1억원	증 8억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책개발 및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도 정책과제 ▶ 지방국정과제 ▶ 지방자치 발전과제 ●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● 지방자치실천포럼 ● 공무원 역량 강화 ● 현안 이슈 대응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7과제(시도별) · 12과제 · 20과제 · 30과제 · 포럼 정착 및 성과창출 · 시책 및 직무교육 (5~6과정, 2박3일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계속) (계속) · 포럼 활성화 및 성과 확산 (계속) · 시도별 1~2건(신규) 	